

# - 2026 스타★소상공인 발굴·육성 지원사업 -

## 소상공인 모집 공고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부산 대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2026년 스타소상공인 발굴·육성 지원사업」의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일  
부산경제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 스타소상공인 발굴·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 인증 통한 지역선도모델 육성
- 사업기간 : 2026. 4. ~ 12. ▶스타소상공인 인증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규모 : 우수 소상공인 10개사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참고2
  - ▶ 2023년 3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 ▶ 로컬 브랜드 및 라이프스타일 혁신 분야
  - ▶ F&B(식음료), H&B(헬스케어·뷰티), 라이프·패션, 로컬·관광 업종 등
- 신청제한

- ①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 \* 단, 본사가 선정되더라도 가맹점에 스타소상공인 인증 현판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 금지
- ②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③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 ④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⑤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⑥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참고3
- ⑧ 당해 부산경제진흥원의 타 유사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⑨ 기타 부산경제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⑩ 불법, 사행성, 유희,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분야 업종 제외

## 2 지원내용

- 스타소상공인 인증 혜택
  - ▶ 스타소상공인 공식 인증서 교부 및 현판 제공
  - ▶ 선정업체 브랜드 및 제품에 공식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 성장지원금 지원항목
  - ▶ 기업당 2,000만원 성장지원금 지원

구 분		집행가능 내역
외주 용역비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브랜드(CI·BI), 패키지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영상 제작 등 용역비
임차비		사업 수행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의 단기 임차비
재료비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핵심 재료(부품) 구입비
수수료		[지식재산] 특허, 상표(CI·BI)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인허가 등] 인증 평가, 시험 성적 의뢰 및 각종 행정 수수료
성장특화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진흥원이 사전 승인한 항목

※ 지원금 선교부(先交付)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집행 및 정산

※ 자산성 품목은 반드시 진흥원 검토 후 집행하며, 자부담 50% 이상 부담 필수

- 성장전략멘토링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문 액셀러레이터(AC) 전담 멘토링 추진
  - ▶ 기업별 경영 애로사항 진단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를 통한 스케일업 전략 수립
- 마케팅 등 기타지원
  - ▶ 언론 기획 보도 및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공동 지원
  - ▶ 부산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및 보증료 우대(부산신용보증재단)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4. 2.(목) ~ 4. 15.(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https://bsbsc.kr/>

□ 구비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1	스타소상공인 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2	스타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계획서	서식 1호
3	사업 참여 협약서	
4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
5	소상공인확인서 1부 (유효기간 : 2026. 4. 1. ~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6	국세납세증명서 (2026.4.2.이후 발급분)	[필수] 국세청 홈택스 ▶국세 납세 증명
7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4.2.이후 발급분)	[필수] 정부24 ▶지방세 납세 증명
8	최근3년간(23~25) 매출액 확인서류	[필수] 국세청 홈택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9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 자격 및 제한 대상 여부의 정확한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 ▶ 1인이 다수의 사업장(복수 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장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반드시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우편 접수 불가)
  -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거나, 서류상 유효기간이 모집 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정상 인정됩니다.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한 서류 중 ‘소상공인’ 이 명시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 단, 소기업 확인서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발급분은 불인정
- ▶ 지정된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건은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서류 평가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니 제출 전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4 추진 및 평가절차

구분	신청접수	서류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	성장멘토링	성장지원금	사업비정산
기관	진흥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멘토	진흥원	진흥원
일정	4월	4월~5월	5월	6월~11월	6월~11월	12월

### □ 평가절차

- ▶ [1단계] 서류검토 : 기본 신청 자격 부합 여부 및 제출 서류 적격성 검토
- ▶ [2단계] 서류평가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5인 이상)의 서면 평가 실시.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3배수) 선정
- ▶ [3단계] 현장점검 :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장 인프라 점검 및 제출 서류 교차 검증 ※허위 사실 적발 시 평가 대상 제외
- ▶ [4단계] 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 대면 평가 실시. 자유 형식의 심층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기업당 15분 내외)
- ▶ [5단계] 최종심의 : 평가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타당성 종합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 서류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소상공인 경쟁력 (30)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
	◆ 창업스토리, 성장을 위한 노력	20
사업 경쟁력 (30)	◆ 사업 운영 주요 성과 ※ 판매량, 시장반응, 창의성 등	15
	◆ 성장성, 경쟁사 대비 차별화 등	15
사업계획 적정성 (40)	◆ 사업 참여 동기 및 사업 참여 목표의 명확성	20
	◆ 예산 활용 계획성 및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	20

## 5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콜센터 ☎ 1833-3665

**참고1**

**24~25년 스타소상공인 지정 현황**

연도	연번	상 호 명	구분	주 요 제 품
2024 (3기)	1	가현정	음식	분식
	2	궁중해물탕 조씨집	음식	팔뚝탕, 백년해물탕, 곤이탕
	3	주식회사 대현상회	제조	참기름 들기름
	4	농업회사법인(주)백로양금	제조	양금, 잼류
	5	(주)손끝	제조	밀랍랩, 밀랍백, 밀랍초
	6	주식회사유핑	제조	의류
	7	주식회사 토리아띠	제조	반려동물 용품
	8	주식회사 티을	제조	여성용품
	9	포즈간츠	제조	신발
	10	히떼로스터리	제조	식품제조 커피가공업
2025 (4기)	11	그린리본	음식	샌드위치
	12	농협회사법인 리큐랩(주)	제조	막걸리
	13	(주)댄스팜코퍼레이션	의류	발레 여성복, 에슬레저
	14	(주)더블헬스케어	제조	두브로 미숫가루
	15	(주)바비조아	제조	저당효소 현미, 곡물칩
	16	부산약콩밀면	음식	속편한 밀면
	17	양가손만두	음식	얇은 피 손만두
	18	차애전할매칼국수	음식	칼국수
	19	코스마일 코퍼레이션	관광	관광기념품
	20	태리제화	제조	수제화, 기능성 신발

【소상공인 확인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A.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B.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11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13 섬유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4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28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업 종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C. 제조업	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33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업		120억원 이하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0억원 이하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0억원 이하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0억원 이하	
F.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G.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H.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I.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5명 미만	
J.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K.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P.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참고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b>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b>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